

개 선

제 목 폐기시료 관리요령 개선
소 관 부 서 ■■■■처
내 용

「폐기시료 관리요령」(이하 요령이라 한다)은 검사시험 후 발생하는 폐기시료에 대해 적용범위와 인수인계, 보관, 재고관리 및 처분 방법 등 운영관리 전반을 규정하고 있다.

폐기시료는 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」 시행규칙 제28조에서 품질검사 대상 제품으로 명시한 휘발유, 등유, 경유, 용제, 중유, 부생연료유, 석유가스, 윤활유(그리이스), 아스팔트 및 석유대체연료 등의 검사시험 후 발생되며, 이외에 환경관련 법령에 의한 검사에서도 일부 발생되고 있다.

그러나, 요령 제3조제①항에서는 폐기시료의 범위를 “휘발유, 경유, 등유, LPG” 로만 정하고 있고, 이외에 다른 유종인 용제, 중유, 부생연료유, 석유가스, 윤활유(그리이스), 아스팔트 및 석유대체연료 등은 요령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.

또한 요령 별표1 “연료유용 폐기시료 관리사항” 에 “휘발유”, “등·경유”에 대한 검사용 및 시험용 폐기량만 명시되어 있을 뿐 LPG 폐기량은 제외되어 있어 각 본부에서는 LPG 검사용 및 시험용 폐기량을 임의로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다.

한편, 요령 제5조에 따라 폐기시료 이관은 매주 금요일에 실시하며 인수·인계서를 작성하여 폐기시료 담당자에게 제출하도록 되어있고, 요령 제8조에 따라 폐기시료 담당자는 매월 말 기준 폐기시료 재고량을 별지 제3호 서식 “폐기시료 재고관리표(월)” 로 작성하여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도록 명시 되어 있다.

하지만 폐기시료 이관은 매주 시행하고 있는 반면 폐기시료 재고는 매월 말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어 폐기시료의 체계적인 실시간 재고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.

조치할 사항

■ ■ ■ ■ 처는 품질검사에서 발생하는 여러 종류의 폐기시료를 고려해 「폐기시료 관리요령」의 폐기시료 적용범위를 조정하여 기타 유종에 대해서도 보관, 폐기 등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또한 별표1 “연료유용 폐기시료 관리사항” 에 LPG에 대한 검사용 및 시험용 폐기량을 명시하고 폐기시료 관련 서식인 별지 제1호 ~ 제3호를 개선하여 폐기시료의 재고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